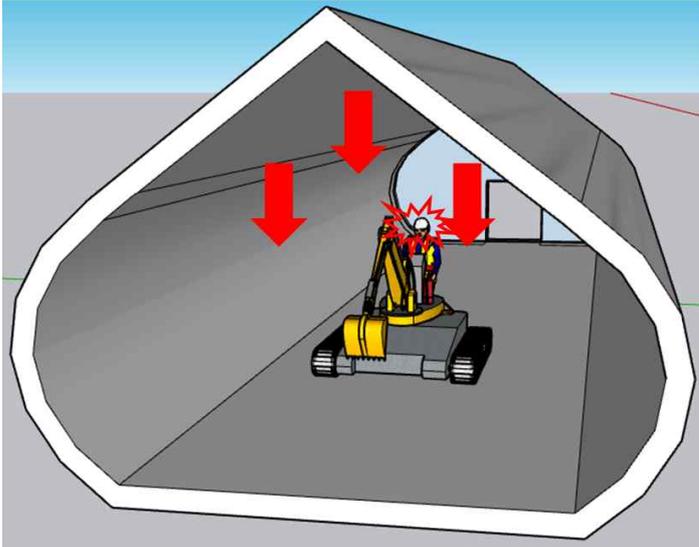




재해 개요

- 2023. 6. 1.(목) 10:30경, 강원도 □□군 △△면 소재 「○○○」 공사 현장에서, ○○ 소속 재해자가 굴착기를 이용하여 건물 내부에서 해체 작업 중 무너지는 천장에 깔려 사망한 재해임



재해 발생 원인

- 사전조사 미실시 및 작업계획서 미작성**
 - 해체 대상 건물의 도면 미확보 및 건물의 상태를 확인하는 등의 사전조사를 미실시하였으며, 건물의 해체 방법, 순서, 도면, 해체 작업용 중장비 등 포함된 해체 작업계획서 미작성
- 굴착기 방호장치 임의해체**
 - 낙하, 무너짐 등의 위험이 있으나 작업용 굴착기 헤드가드를 해체하는 등 방호조치 미실시



재해 예방 대책

- 사전조사 실시 및 해체 작업계획서 작성**
 - 해체 작업 전 대상 건물 상태 확인, 구조도면 확보 등의 사전조사 후,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체 작업 방법, 순서, 기계·기구 등을 선정하고, 무너짐, 깔림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, 이행하여야 함
- 굴착기 방호장치 유지·관리 철저**
 - 건축물 내부 해체작업 시 낙하, 무너짐 등의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견고한 보호 구조를 갖춘 장비를 사용하고, 방호장치를 임의로 해체하지 않도록 유지·관리 하여야 함
- 건축물에 대한 안전성평가 실시**
 - 보수공사 및 해체공사로 인해 충격, 진동 등 건축물에 추가적인 하중이 작용하여 낙하, 무너짐 등의 잠재적인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안전진단 등 안전성평가를 선행하여 근로자에게 미칠 위험성을 미리 제거하여야 함

※ 본 사례는 공공기관 발주공사·직영·도급 등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하여 안전보건공단에서 동종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배포하고 있습니다.